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82

발의연월일: 2025. 3. 31.

발 의 자:김미애·이달희·김위상

김기현 • 주호영 • 박성민

박상웅・김 건・진종오

임이자 • 이종배 • 김정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,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그 결과 법인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 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, 그 법 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하여 그 부당이득을 결손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 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 으려는 것임(안 제77조의2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2제1항 본문 중 "보험료, 연체금"을 "보험료, 제57조에 따른 징수금, 연체금"으로, "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"을 "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(제57조에 따른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, 체납처분비의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전단 중 "보험료"를 "보험료, 제57조에 따른 징수금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77조의2(제2차 납부의무) ① 법 제77조의2(제2차 납부의무) ① --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 -----<u>보험료,</u> 제57조에 하여야 하는 보험료,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 따른 징수금, 연체금-----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 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 (제57조에 따른 징수금 및 그 점주주(「국세기본법」 제39조 에 따른 연체금, 체납처분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을 자를 말한다)가 그 부족한 금 말하다)-----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. 다만, 과점주주의 경우에 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(의결권이 없 는 주식은 제외한다) 또는 출 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(의결권이 없 는 주식은 제외한다) 또는 출 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 ② 사업이 양도・양수된 경우 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

납부의무가 부과된 <u>보험료</u>,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고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. 이 경우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			- <u>보험료,</u>	제
57조에	따른	징수금	<u></u>	